

의안번호	2218072
의 퇴 인	구자근 의원
회 답 일	2026. 4. 30.
추계번호	26A1934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3(수도권 외 지역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특례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 - 2. 제13조에 따른 입지지원 - 3. 제14조에 따른 인력지원 - 4.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- 5.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 - 6. 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2항) ○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·절차 및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3(수도권 외 지역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특례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16조의3제1항),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6조의3제2항)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확정하기 어려워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, 개정안은 추가 지원의 대상·기준·절차 및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(안 제16조의3제3항)
 - 참고로, 지난 3년 동안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, 2025년의 경우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총 16건(1,245억원, 국비 기준)의 지원이 이루어졌음

[표 2]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

(단위: 건, 백만원)

세부사업(내역)	구분		2023	2024	2025
투자유치기반조성 (국내복귀투자보조)	수도권	건	—	1	—
		금액	—	203	—
	비수도권	건	8	16	16
		금액	57,000	99,797	124,500
	예산(국비 기준)		57,000	100,000	124,500

자료: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